# 행정기본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개정]

#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법령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 나.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나.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5. '제재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 다.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 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 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
-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②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 제7조【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계산】 법령 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2.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 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다.

### <참고조문>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제2장 행정의 법원칙

-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 분

- 제14조 【법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 ③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 <참고조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 제15조 【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수리 등(이하'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

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1. 법률에서 정한 철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제20조 【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 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 2. 위반행위의 결과
  - 3. 위반행위의 횟수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참고조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 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참고조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절 인ㆍ허가 의제

- 제24조 【인·허가 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②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 의제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 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 제25조【인·허가 의제의 효과】 ① 제24조 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인ㆍ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ㆍ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ㆍ허가에 한정된다.
- 제26조 【인·허가 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공법상 계약

-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절 과징금

-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 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1. 부과・징수주체
- 2. 부과사유
- 3. 상한액
-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절 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 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2. 이행강제금의 부과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 3. 직접강제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 4. 강제징수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 5. 즉시강제 :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 ② 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부과・징수주체
- 2. 부과요건
- 3. 부과금액
- 4. 부과금액 산정기준
- 5. 연간 부과횟수나 횟수의 상한

-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의무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 2. 의무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업무 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참고조문>

-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다
  -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 3.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

- 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 제35조 【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 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 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 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 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 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 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 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4.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하다.
  - 2.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법령 등은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 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 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
  -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

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재처분에 관한 법령 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 에 관한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 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 ② 제32조 및 제3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제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기본법 기출문제>

# <0× >

- 0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본법 상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2022 국가직 7급
- **02-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 ×) 2021 행정사
- 02-2.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 (○, ×) 2021 행정사
- 03.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x) 2021 국가직 7급
- **04-1.**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 2021 행정사
- 04-2. 법령 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023 소방간부, 2021 행정사
- 04-3.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 2021 행정사
- 05. 행정법령의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 ×) 2022 군무원 9급
- 06.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 2023 지방직·서울시 9급, 2021 경행경채
- 07. (법치행정은)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 ×) 2023 소방간부

08.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2022 국가직 9급
- 09.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O, x) 2023 서울시 지적 7급
- 10-1.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 2023 국가직 7급, 2023·22 변호사, 2021 국가직 7급
- 10-2.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2023 소방직 9급
- 11-1.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 2023 국가직 7급
- 11-2. 행정청이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2023 변호사
- 12. 행정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2023 소방승진
- 13.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2023 소방간부, 2022 서울시 7급
- 14-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 ×) 2024 소방간부
- 14-2.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라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 ×) 2022 군무원 9급
- 14-3.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 ×) 2023 소방간부, 2022 서울시 7급

- 15-1.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지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 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 ×) 2023 소방간부
- 15-2. 법령위반행위가 2022년 3월 23일 있은 후 법령이 개정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이 감경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 ×) 2022 국가직 7급
- 16-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 ×) 2021 지방직·서울시 9급
- 16-2.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 ×) 2021 군무원 7급
- 17.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 2022 국회직 8급
- 18-1.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만약 부관을 붙였다고 할지라도 무효이다. (○, ×) 2023 소방간부
- 18-2.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 ×) 2023 군무원 9급, 2021 국가직 7급, 2021 지방직·서울시 9급
- 19-1.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 2024 소방간부
- 19-2.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 2021 국가직 7급
- 19-3. (A광역시 B구 구청장 甲은 관할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乙이 주택법에 따라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면서 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乙에게 사업계획구역에 접하고 있는 B구 소유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甲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의 면적을 당초 면적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 (○, ×) 2023 변호사
- 19-4. 사정변경이 있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부관을 새로 부가하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x) 2024 변호사
- 19-5. (A광역시 B구 구청장 甲은 관할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乙이 주택법에 따라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면서 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乙에게 사업계획구역에 접하고 있는 B구 소유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부관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변 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붙인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甲은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부관을 사후에 붙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 ×) 2023 변호사
- 19-6. [A시장은 甲 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〇, ×) 2021 행정사
- 20.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 ×) 2023 국가직 7급
- 21-1.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 ×) 2023 군무원 7급
- 21-2.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

도 가능하다. (○, ×) 2023 국가직 9급

- 21-3.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2021 지방직·서울시 9급
- 21-4. 행정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 2024 변호사
- 21-5.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 2023 지방직·서울시 7급
- 21-6.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O, x) 2023 군무원 9급
- 21-7.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x) 2023 소방간부
- 2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된다.

(○, ×) 2023 군무원 9급

- 23-1.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O, x) 2023 소방직 9급
- 23-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 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 2021 군무원 9급
- 23-3.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O. x) 2021 지방작·서울시 9급
- 23-4.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x) 2023 국회직 8급
- 24-1.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 x) 2023 지방직·서울시 9급
- 24-2.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 2023 지방직·서울시 9급
- 25-1.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 2024 소방간부
- 25-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 2024 소방간부
- 26.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 x) 2023 서울시 지적 7급
- 27-1.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서면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2023 지방직·서울시 7급
- 27-2.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 ×) 2021 지방직·서울시 9급
- 28.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x) 2022 국가직 7급, 2021 지방직·서울시 9급
- 29.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x) 2022 지방직 7급
- **30.**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2023 소방간부

31.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 ×) 2023 국가직 9급

32.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024 소방간부

33-1.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 ×) 2023 지방직·서울시 7급

**33-2.**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 2022 군무원 9급

- 34.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 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 2024 소방간부
- 35.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 2024 소방간부
- 36-1.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내부업무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청이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 2024 소방간부
- 36-2. 행정기본법에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다. (○, x) 2023 소방승진
- 36-3.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 ×) 2023 소방직 9급
- 36-4. 법률에 행정기관의 내부업무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 ×) 2023 군무원 7급

### < >

### 37. 행정기본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 소방승진

- 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어야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 38.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경행경채

-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②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10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면허정지기간은 그 날 (공휴일 당일)로 만료한다.
- ③ 법령 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 39. 행정기본법상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과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회직 8급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② 처분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법령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④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⑤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0.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 소박가부

-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②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 ③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④ 법령 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⑤ 법령 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 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1.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 소방직 9급

- ①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 본법에 따른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42.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 군무원 9급

- 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행정청은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한다.
- ④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43.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21 군무원 9급

- ⊙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을 붙일 수 있다.
- 1 7, 0, 6

2 7, 0, 6, 8

③ ⑦, □, □, □, □

(4) (L), (E), (E), (D)

### 44. 다음 중 행정기본법에 제시된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2 구므워 7근

-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45.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2021 행정사

-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④ 비례의 원칙
- ⑤ 평등의 원칙

### 46. 다음 중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행정법상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2 군무원 7급

- ①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② 신뢰보호의 원칙
-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47.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 지방직・서울시 7급

-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 ③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 ④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 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8. 행정기본법상 법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서울시 지적 7급

- ①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 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 ③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 ④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 49.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 국가직 7급

-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③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 50.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 군무원 9급

- ①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의 경우 일단 그 처분을 한 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 ② 핵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③ 철회권의 유보는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 51.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가직 7급

- 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 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④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52. 행정기본법상 철회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 소방승진

- ①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53.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소방직 9급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 54.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2023 국가직 9급

- ①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④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5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4 변호/

甲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A시장에게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한다. 동법 제47조는 A시장이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A시장이 하천점용허가청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甲이 하천점용허가를 의제받으려면 위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하천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하천 점용허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A시장과 하천점용허가청 간에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성립시점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 제된다.
- © A시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하천점용허가청은 하천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되며, 하천 점용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 의제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 ②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면 하천점용허가청은 하천점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①, Û

② ⑦, ⑤

③ ⑦, ⊜

(4) (L), (E)

⑤ ⑤, ⊜

### 56.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 소방간부

- ①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7.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2023 서울시 지적 7급

- ① 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당사자는 제재처분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 58.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 군무원 7급

-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된다.
- ③ 당사자는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도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는 없다.
- ④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 59.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입법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 소방간부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③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법령 등은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 ⑤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부령으로 정한다.

#### < >

- 01. × (제2조 제1호)
- **02-1.** (제2조 제2호) **02-2.** × (제2조 제2호)
- 03. (제6조 제1항)
- 04-1. (제7조 제1호) 04-2. (제7조 제2호) 04-3. (제7조 제3호)
- **05.** × (제7조)
- 06. (제8조)
- 07. (제8조)
- 08. (제10조)
- 09. (제11조 제1항)
- **10-1.** (제12조 제1항) **10-2.** × (제12조 제1항)
- **11-1.** (제12조 제2항) **11-2.** (제12조 제2항)
- 12. (제13조)
- 13. (제14조 제1항)
- 14-1. × (제14조 제2항) 14-2. (제14조 제2항) 항) 14-3. (제14조 제2항)
- **15-1.** (제14조 제3항) **15-2.** (제14조 제3항)
- 16-1. (제15조 관련) 16-2. (제15조 관련)
- 17. (제16조 제1항)
- **18-1.** × (제17조 제1·2항 관련) **18-2.** (제17 조 제2항)
- 19-1. (제17조 제3항) 19-2. (제17조 제3항 제2호) 19-3. × (제17조 제3항 제2호) 19-4. × (제17조 제3항 제3호) 19-5. (제17조 제3항 제3호) 19-6. × (제17조 제3항 제2호)
- 20. (제17조 제4항)
- 21-1. (제18조 제1항) 21-2.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21-3. (제18조 제1항) 21-5. (제18조 제1항) 21-5. (제18조 제1항) 21-6. (제18조 제1항) 21-7. (제18조 제1항)
- 22. (제18조 제2항 제2호)
- 23-1. (제19조 제1항) 23-2. × (제19조 제1항) 23-3. (제19조 제1항) 23-4. (제19조 제2항)
- **24-1.** × (제20조 본문) **24-2.** (제20조 단서)
- 25-1. (제24조 제1항) 25-2. (제24조 제3항)
- 26. (제25조 제1항)
- 27-1. × (제27조 제1항) 27-2. (제27조 제1항 관련)
- 28. (제27조 제2항)
- 29. × (제28조 제1항 관련)
- 30. (제29조)
- 31. (제30조 제1항 제1호)
- 32. (제30조 제3항)
- **33-1.** × (제31조 제5항) **33-2.** (제31조 제5항)
- 34. (제31조 제6항)
- 35. (제33조 제2항)
- **36-1**. (제34조) **36-2**. (제34조) **36-3**. ×

- (제34조) **36-4.** × (제34조)
- **37.** ② (① 제13조, ② 제5조 제2항, ③ 제4조 제2항, ④ 제3조 제1항)
- 38. ③ (① 제6조 제1항, ② 제6조 제2항, ③ 제7조 제2호)
- 39. ③ (① 제6조 제1항, ②③ 제6조 제2항, ④ 제7 조 제1호, ⑤ 제7조 제2호)
- **40.** ③ (① 제6조 제1항, ② 제6조 제2항 제1호, ③ 제6조 제2항 제2호, ④ 제7조 제1호, ⑤ 제7조 제2호)
- **41.** ① (① 제6조 제1항, ② 제14조 제2항, ③ 제4 조 제2항, ④ 제27조 제2항)
- **42.** ③ (① 제13조, ② 제9조, ③ 제12조 제1항, ④ 제11조 제1항)
- **43.** ③ (③ 제4조 제1항, ⓒ 제8조, ⓒ 제9조, ⓒ 제13조, ৷ 제17조 제1항)
- **44.** ② (① 제8조, ② 제9조, ③ 제11조 제2항, ④ 제12조 제1항)
- **45.** ① (② 제13조, ③ 제11조, ④ 제10조, ⑤ 제9 조)
- 46. ④ (① 제11조, ② 제12조, ③ 제13조)
- **47.** ④ (① 제19조 제1항, ② 제20조, ③ 제14조 제2항, ④ 제14조 제1항)
- **48.** ② (① 제14조 제1항, ② 제14조 제2항, ③ 제14조 제3항 본문, ④ 제14조 제3항 단서)
- **49.** ④ (① 제17조 제1항, ② 제17조 제2항, ③ 제17조, ④ 제17조 제3항 제3호)
- 50. ③ (① 제17조 제3항 제2호, ② 제17조 제1항, ③ 제17조 제4항 제3호)
- **51.** ② (① 제18조 제1항, ② 제18조 제2항, ③ 제19조 제1항, ④ 제15조)
- 52. ① (① 제19조 제2항, ② 제19조 제1항 제2호, ③ 제19조 제1항 제3호, ④ 제19조 제1항 제 1호)
- **53.** ④ (① 제8조, ② 제12조 제2항, ③ 제33조 제1항, ④ 제20조)
- 54. ④ (① 제23조 제2항 제4호, ② 제23조 제2항 제1호, ③ 제23조 제2항 제3호. ④ 제23조 제2항 제2호)
- 55. ① (③ 제24조 제2항, ⓒ 제25조 제1항, ⓒ 제24조 제5항. ⓒ 제26조 제1항)
- 56. ③ (① 제36조 제1항, ② 제36조 제2항, ③ 제36조 제3항, ④ 제36조 제7항 제6호, ⑤ 제36조 제5항)
- 57. ④ (① 제36조 제2항, ② 제36조 제4항, ③ 제 37조 제1항, ④ 제37조 제8항)
- 58. ② (① 제36조 제4항, ② 제36조 제7항 제1호, ③ 제37조 제1항, ④ 제37조 제5항)
- 59. ⑤ (제38조)